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9. 14 선고 2021가단809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이대승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7.

판 결 선 고 2022. 9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망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8.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위 부동산에 대한 1/2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D, E에게 각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1/4 지분에 관하여 가. 선택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. 3. 8. 접수 제26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나.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망 C와 피고는 1992. 2.경 혼인하였다가 2017. 5.경 이혼하였다.
- 망인은 2019. 3. 8.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에 관하여 동일자 재산분할(이하 '이 사건 재산분할')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.
-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자식들인 D, F가 공동상속하였다.
- 한편, 원고는 2016. 1.경 망인에게 5,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3호증, 을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겨 주었다.

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약 25년간 지속되었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50%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 재산분할은 위 부동산에 대한 1/2 지분 범위 내에서 망인에 대한 대출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1/2 지분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D, F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(구체적으로는 D,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각 1/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,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).

나. 판단

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

과대하고,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,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,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).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각 사실조회회신 등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 중 1/2 지분(원고도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는 부분)을 넘는 부분이 상당성을 잃은 과대한 것이라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,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그러한 점이 참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(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는 유책배우자인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가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망인과 피고 사이의 두 자식 중 1명은 이혼 당시 미성년자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)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예혁준

별지

(1층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동[도로명 주소]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

1층 437.4㎡

2층 1023㎡

3층 1023㎡

4층 1023㎡

5층 1023㎡

6층 1023㎡

7층 1023㎡

8층 929.15㎡

9층 929.15㎡

10층 929.15㎡

11층 929.15㎡

12층 929.15㎡

13층 540.25㎡

지층 873.305㎡

부속건물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

증강공급실, 주차장

지하1층 874.34㎡

지하2층 434.75㎡

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

노인정 58.5㎡

(부속건물은 동, 동 공용임)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 8552.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1 1991년 12월 31일 철근콘크리트조 73.15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8552.7분의 32.32, 끝.

